

순천대학교생활체육지도자연수원운영규정

제정 2003. 5. 1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연수원은 순천대학교 생활체육지도자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제22조 제2항과 체육지도자 연수 및 자격검정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1항에 따른 연수원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연수원 설치 및 운영) 이 연수원은 체육지도자 연수 및 자격검정에 관한 규칙 제2조에 의하여 순천대학교 부설기관으로 설치하며, 동 규칙 제9조에 의하여 설치된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제4조(직무) 이 연수원은 연수원생(이하 '연수생'이라 한다)에게 체육지도자로서 갖추어야 할 전문적인 소양과 지도능력의 향상을 위한 각종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한국체육의 지속적인 발전 및 지역사회체육의 발전에 기여한다.

제 2 장 조 직

제5조(원장) ①연수원에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1인을 둔다.

②원장은 체육관련분야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③원장은 연수원을 대표하고 원무를 통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6조(조직) ①연수원에 연수부와 행정실을 두며, 연수부장 1인을 둔다.

②연수부장은 체육관련 분야 전임교원 중에서 원장이 임명한다.

③연수부는 연수계획, 교육진행, 평가 및 기타 연수에 관한 제반사항을 담당한다.

④행정실은 관인관수, 서무, 회계 등 행정지원 업무를 담당한다.

제 3 장 운 영 위 원 회

제7조(설치) 연수원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수원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제8조(구성) ①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9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연수부장이 되며, 위원은 체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원장이 위촉한다.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까지 한다.

⑤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연수원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⑥위원장이 유고시에는 연수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심의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수원 운영에 관한 기본 방침 수립
2. 연수계획
3. 교과과정 편성 및 강사 선정
4. 연수대상자 선정
5. 수료자 사정
6. 기타 위원장이 부의 하는 연수원 운영에 관한 사항

제10조(소집) 운영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회 소집시에는 적어도 회의 2일전에 회의 목적과 개최시간 및 장소를 명시하여 서면 통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회의록 작성)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반드시 회의록을 작성하되,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운영위원회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성명
3. 보고 및 제의사항

4. 의결사항

5. 기타사항

제12조(의결 정족수) 운영위원회는 특별히 이 규정에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긴급처리) 위원장은 사항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이를 집행한다. 다만, 위원장은 이를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4 장 연 수

제14조(모집공고) 원장은 연수시행일 30일전에 시행일·장소·연수과목·연수방법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5조(등록신청) 연수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연수원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지원서 1통
2.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통
3. 칼라사진(4cm x 5cm) 4매
4. 주민등록증 사본 1통
5. 기타 해당서류

제16조(연수생 자격) 3급 생활체육지도자 과정의 연수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제22조 제4항 내지 제5항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제17조(연수생선발) 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수생을 선발한다.

제18조(연수과정 및 교과) ①연수과정은 3급 생활체육지도자 과정과 체육에 관한 행정, 연구, 지도분야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연수과정을 들 수 있다.

②각 연수과정의 교과과정은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연수원장이 이를 정한다.

제19조(연수계획) ①원장은 매년 12월 말까지 다음 연도의 연수계획을 수립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계획을 변경하거나 연수원의 신설 등으로 연수계획 제출에 차질이 생길 경우 연수개시 30일전까지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0조(연수기간) ①3급 생활체육지도자 과정의 연수시간은 60시간 이상으로 하되,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원장이 이를 정한다.

②체육에 관한 행정, 연구, 지도분야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연수과정에 대한 연수시간은 당해 과정의 내용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원장이 이를 정한다.

제 5 장 평 가

제21조(시험) 연수생의 교육성과와 자질향상을 위하여 연수 중 시험을 실시한다. 다만, 원장은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1. 출제와 채점은 강의 담당강사가 실시한다.
2. 성적은 소정 서식에 의하여 채점 일람표를 작성하고, 별도의 학적부에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3. 근태평가는 출·결석, 연수태도, 규율준수 등에 관하여 원장이 정하는 근태평가 기준을 따른다.

제22조(배점) 각 과정별로 학업성적의 총점과 각 과목별 배점은 원장이 정한다. 학과시험과 근태평가의 비율은 학과 80%, 근태 20%로 하고, 학과시험의 경우 필기시험과 실기실습을 겸할 때에는 필기시험 50%, 실기실습 50% 비율로 한다.

제 6 장 수 료

제23조(수료자격) 연수생의 수료자격은 총 연수시간의 90/100 이상을 수강한 자로서 필요한 경우 원장이 정하는 평가기준에 합격한 자로 한다.

제24조(수료자 사정) 원장은 수료일람표를 수료일 3일전까지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수료자 사정을 받아야 한다.

제25조(수료증 교부) 이 연수원에서 소정의 연수과정을 수료한 자에 대하여는 원장명의의 수료증을 교부한다.

제26조(연수결과 보고) 원장은 연수과정별 결과를 연수 종료후 30일 이내에 문화 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7 장 상 별

제27조(표창) ①원장은 연수생 중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에게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표창을 할 수 있다.

②표창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최우수상
2. 우등상
3. 공로상

제28조(제적처분) 원장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연수생에 대하여 제적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 원장은 제적여부를 운영위원회에 부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 품행이 불량하며 교육분위기를 해치는 자.
2. 학력이 열등하며 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3. 학칙에 위배하여 연수생들의 지탄을 받는 자.
4. 정당한 사유없이 연수시간의 10/100이상 결석한 자.
5. 시험시 부정행위를 한 자.
6. 기타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자.

제 8 장 보 칙

제29조(재정) 연수원의 재정은 국고보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수익자 부담금 및 학교지원금 등으로 한다.

제30조(규정개정) 이 규정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 재적위원 1/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문화 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1조(시행세칙) 연수원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정한다.

부 칙(2003. 5. 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